

제40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4월18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2.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3.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5)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2)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5)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
9. 공무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3)
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7)
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318)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7)
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8)
1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6)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9)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1)
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8)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7)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1)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9)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4)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7)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1)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5)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5)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4)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5)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0)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6)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7)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1)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4)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9)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2)
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32)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6)
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8)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6)
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2)
4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5)
4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3)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66)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4)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10)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59)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4)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5)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7)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2)
5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3)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7)

상정된 안건

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5
2.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5
3.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5
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5) ……………5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2) ……5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5) ……5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 ……………5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 ……………5
9. 공무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3) ……………5
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7) ……5
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318) ……5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7) ……5
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8) ……5
1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5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6) ……………5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9) ……………6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91) ……………6
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8) ……………6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7)	6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1)	6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9)	6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4)	6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7)	6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1)	6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65)	6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5)	6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4)	6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5)	6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50)	6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6)	6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7)	6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5)	6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1)	6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4)	6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9)	6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2)	6
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32)	6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6)	6
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8)	6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6)	6
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2)	6
4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5)	6
4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3)	6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66)	6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4)	6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10)	6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59)	6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84)	6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05)	6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7)	6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2)	6
5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3)	6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7)	7

(14시39분 개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잠시만요. 뭐냐 하면 하고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를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할까요?

○이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영진 하실 거예요?

○이은주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까지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비) 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김영진 노동법안소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사일정을 보면 53건입니다. 53건인데 물론 앞의 1·2·3,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 이것은 몇 차례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라서 어느 정도 저희가 내용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저희가 전혀 미리…… 어제저녁 늦게 이렇게 53건이나 되는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보냈는데 이것 밤새 봐도 사실 내용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위를 할 때 물론 전반기보다는 낫습니다. 전반기 때는 5~6개월씩 전체회의도 안 열어 주고 소위도 지금은 여당이시지만 야당 간사께서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해 주시는 바람에 실제로 환노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저희가 회의를 자주 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간사 간에 합의하셔서 안건을 주시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입법도 좀 있습니다. 노동부는 정부입법이 있고 그러면 의원실에 미리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번도 야당

위원 방에 와서 설명하거나 제안하시거나 그런 것도 없고 소위에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 잘 해 갖고 오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이든 제도든, 지금 언론에 나가서 장관께서 여전히 69시간 포기 못 하고 전체 노동자들 가슴에 멍들이고 계시는데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좀 예의를 지켜서, 갖춰서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법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주 최장 69시간 제도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께서 ‘앞으로 정부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히 포괄임금제도는 입법까지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차관께서도 기억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은주 위원 또 여당 위원들께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포괄임금제도 금지를 윤석열 정부는 추진하게 될 거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늘,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53건의 안건이 올라와서 너무나 당연히 우리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제출한 포괄임금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오늘 그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도 않았습시다. 야당도 찬성하고 여당도 찬성하는데 왜 포괄임금제도 금지 법안이 상정이 안 됐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어보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됐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 법안 상정을 여당이 반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밖으로는 MZ세대, 노동시장 약자들을 위한 공짜노동 근절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사업주 편에 있는 거 아니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조속히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직도 특히 IT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노동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취약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박대수 위원님.

○박대수 위원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 오늘 노동특위를 구성했어요,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당은 거기 관련해서 검토하고 해서 안을 낼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관해서는 법안 심사에 관한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늦어져서, 어제 오후 늦게나 돼서, 검토보고서 및 안전 관련한 배포가 좀 늦어져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간에 하루 전에 해서 최소한 검토를 한 번 하고 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사실은 진행하는 데 내용을 상당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하고, 제도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전에 국토위 이런 데서는 선입선출로 해서 협의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건 들어온 날 짜대로 그냥 협의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의결되는 것은 의결하고 그렇지 않은 건은 계속 심의하고, 이런 방식으로라도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노위원장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여야 간에 협의를 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법안 심사 관련한 안전 상정 관련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전체 환노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를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야 간에.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숙려기간이 다 지났고 세 분의 위원님이 발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논의를 즉 진행을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여당측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지 않았는데 다음번 소위 때는 정리되는 대로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건 충분하게……

문제가 있으면 저는 소위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그 상황에서 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논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논의 자체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법안 발의에 관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2.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3.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25)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2)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5)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0)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7)
9.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3)
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7)
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318)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7)
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8)
1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4)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6)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169)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291)
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888)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987)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171)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289)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044)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877)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191)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65)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95)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34)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95)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350)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436)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787)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49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601)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064)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199)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222)
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332)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366)
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18)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6)
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82)
4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85)
4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523)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566)
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04)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10)
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59)
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84)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705)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747)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762)
5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3)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67)

(14시47분)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나뉘 드린 자료에 기반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항부터 3항까지지요, 첫 번째 안건이?

○전문위원 김원모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이견 저희들이 공청회도 했고 논의를 한번 길게 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수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임이자 간사님, 이 세 분이 논의를 그래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 진행됐던 바들을 얘기해 주시면 논의에 속도를 내서 오늘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소위에서 축조심사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까지 제정안에서 조율이 덜 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목차에서 보시면 1번 목적·정의, 5번 심의위원회, 8번 지원체계 구축 및 센터 설치 부분입니다.

먼저 소위 자료 6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명과 목적·정의 조항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문대비표 조정의견(안)을 보시면서 논의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제정안의 핵심 개념으로 가치를 포함하는 ‘정의로운’이라는 용어와 ‘노동전환’이라는 개념을 법률 제명과 목적에 명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수진 의원님께서 제명에 ‘노동전환’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자고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목적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이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안에서는 가치가 포함되는 ‘정의로운’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강은미 의원님 안에서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님 안에서는 ‘노동전환’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라는 개념을 목적에 포함할지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수진 위원님, 의견 한번 주시지요.

이수진 의원님 안을 보면, 이 문제는 상당히 길게 얘기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임이자 위원님은 가치적 내용인 ‘정의로운’이라는 이 말을 쓰는 거 자체가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고용안정 지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수진 위원님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은주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간략, 짧게 짧게 합시다. 조항들이 많으니까요.

○이수진(비) 위원 지난번에 논의를 길게 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이 제정법률안의 제목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 목적과 정의 안에 ‘노동전환’이라는 분명한 개념들을 담는다면 제가 고용안정 등, 제목은 조금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다만 또 강은미 의원님 안에 보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탄소중립 기본법이 모태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도 이런 법이 있어야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을 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을 거버넌스에 참여시켜서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의미로 만든 제정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목이랑 목적·정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토대가 된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노동부랑 임이자 간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가지고 목적·정의에 담으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노동부에서 그다지 뭘 담은 것 같지 않아요. 노동부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시간이 약간 필요해서 얘기하시고 노동부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의견 주시고 노동부 의견 주시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얘기했던 내용이니깐요.

○이은주 위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법을 논의하는 것도 기후위기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인데 이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이후에 제가 강은미 의원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원칙적인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법안의 심의를 위한 수정 제안도 할 거고 여기서 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반드시 제명과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정의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공정·정의, 핵심 가치예요. 왜 그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목적과 제명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혹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실제로 조금 조정도 했었고요. 오늘 임이자 간사님이 안 오셨는데, 지난번 소위 때 끝나고 회의 석상은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시면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셔서, 이 부분은 꼭 제명과 목적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소위원장 김영진 조금 이따 오실 겁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꼭 여기에 ‘정의로운 일자리’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유치하지 않나?

○이수진(비) 위원 아니,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들어가는데 그게 유치해요?

○박대수 위원 이게 꼭 ‘정의로운’ 그러면 정의를 안 한다는 것, 강한 부정하는 내용인 것 같아

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꼭 이런 걸 여기다, 법 조문에다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김영진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저는 하여튼 법률 용어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ILO에서 쓰는 디센트 워크(decent work)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양질의 일자리’냐? 저도 그거 쓸 때 ‘정의로운 일자리’로 쓰는 게 더 적합한 표현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낸 적은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들어왔을 때는 법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표현하는가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동법전 안에 ‘정의로운 일자리’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추구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정의롭지 않은 일자리도 있느냐 또는 양질이 아닌 일자리를 전제로 법문이 축조된 게 있는가라는 고민까지 되고요.

또 하나는 탄소중립 기본법상 ‘정의로운 전환’, 이때 쓰는 의미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이걸 수식어가 일자리에 한정하는 의미인데 그걸 끌어와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요지는 뭔가 법이 해석을 분분하게 하기보다는 간명하게 끊어 뚫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의견 들었고,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현재 목적 조항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목적 조항으로서 완결성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의로운’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정의 조항에 다시 넣어서 정의를 한 다음에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목적 조항이 완결된 상태에서 굳이 넣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쓰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탄소중립에 국한해서 쓰였던 단어이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서는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까지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인용을 꼭 해야 될 그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에서……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에서 저희가 ‘정의로운’이라는 용어를 쓴 경우도 사실은 극히 드문 상황이고 해서 지금 조항으로서의 완결성이나, 법기술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또 조항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항으로서 갖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것 관련해서 임이자 간사님하고 이수진 위원님하고 이은주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은주 위원 아니, 조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안 오셨는데, 일단 제명도 그렇고 총칙에 목적도 있고 또 정의 개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제정법에 충실하게 담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추상적인 개념? ‘정의로운 전환’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제명과 목적과 정의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저는 ‘일자리 전환’이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노동전환’도 동의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고용안정 지원’, 제명에 있어서 그것이 좀 미시적인 내용이고 전체 법안을 규정하기에는 사실은 이 법의 여러 가지 하위 조항에 가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노동전환’ 정도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은주 위원 아니, ‘일자리 전환’ 대신 ‘정의로운 노동전환’.

○소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정의로운’까지는, 지금 여당 측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법률안에 넣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 2개를 조정해 놓은 부분으로 하고……

○이수진(비) 위원 잠깐만요, 간사님.

제가 이 법안을 제일 처음 발의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 발의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의 노동계랑 산업계, 기업들 다 만났는데 거기만 만난 게 아니에요. 노동부, 정부 의견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렵다는 거 좀 빼기도 하고, 정부가 ‘정의로운’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공정한’으로 답았고…… 처음에는

제목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법률’이었어요. 처음에 저한테 ‘공정한’이 좋겠다고 노동부가 의견도 줬어요, ‘정의로운’은 좀 그렇고 ‘공정한’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다 지난번 회의 때도 했던 얘기이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법체계상 ‘정의로운’, ‘공정한’ 이런 게 안 맞다 이것은 본인 부정이예요. 노동부가 ‘공정한’이라고 제안까지 했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논의하라 그래서 그렇다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까지도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대신에 목적이나 정의 쪽에다가…… 정의에 ‘노동전환’ 다 뺐더라고요, 노동부가 임이자 간사님 법안 만들어 준 거 보니까. 제가 다시 채워 넣으라 그랬습니다. 원래 당신들이 제안했던 거니까, 적어도 이게 무슨 정쟁거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철학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제목도 양보를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받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그때 제안해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다른 법안에서 이은주 위원님도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목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그동안 뺐던 것들을 다시 조율하고 이러면 제목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저희가 받은 게 없어요, 임이자 간사님도 지금 안 계시고.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면…… 제명과 총칙, 목적에서 논의가 약간 좁혀졌는데요. 수정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이 회의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원모 다음, 별도 위원회 설립 관련해서 3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노사정 위원이 어떠한 비율로 참여해야 하고 또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통하여 고용정책심의회와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고용노동부가 확답을 하는 형태로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 관련해서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돼서 조정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님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견 진짜 제가 너무 통 크게 양보를 한 거라, 별도의 위원회를 뒀야 한다는 건데 고용정책심의회……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한다면 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지 그 뜻은 살려야 되는데 이걸 부대의견으로 제안을 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법문에 고용정책심의회 아래에 산업전환전문위원회를 둔다, 특히 노사동수 참여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 11월 22일 날, 작년에 법안심사소위 때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이 발언하신 게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견 말씀드린 대로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어디든 자원을 동원하고 예산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걸 주장하는 거고,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하든 노사가 많이 참여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법문에 들어가야지

부대의견은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고용노동부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고용정책심의회에 한다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까지도 저희가 동의하는 것이고, 이게 법기술적으로 되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안에다가 법기술적으로 전문위원회를 넣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때 차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벌써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법기술적으로, 체계상으로 전문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전환법에도 담지 못한다 그러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담아야 되는데 법이 발의되거나 진행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셔서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도 전혀 안 하셨고.

또 하나,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고용정책심의회 관련한 전문위원회가 그동안 대통령 시행령으로만 돼 있지 법안에 넣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께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에 담겠다 그래 놓고 결국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약속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지난 몇 달간 찾아오셨어야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두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법에 또 얘기하지 않아도 둘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법 체계상의 그런 충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원래 전문위원회 심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드린 얘기고요. 어쨌든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두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사실 여기에서의 쟁점은 노사가 얼마나 참여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산업전환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을 논의해야 되지 여기서 노사가 어떤 협의를 해서 뭘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사 참여는 당연히 하되 인적 구성은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게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간에 계속, 지금 조정안이 세 가지 쟁점 외에는 다 합의가, 거의 어느 정도는 의견 접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도 통과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비) 위원 중요한 게 합의가 안 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지요, 제가 보기에 나머지 것들은 단어 선택인데.

그때 차관께서는 강은미 의원안에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정의당 이은주 위원께서 양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어떻게 잘 다뤄질 것인가에 대해서 뭘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신 거 없어요. 궁금해서 저도 계속 물어봤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러나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법체계상 맞지 않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노사위원 같은 경우도 고용정책심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당사자인 노사위원 참여가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라도 이것만큼은 노사가 동의가 되어야지만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노사 동수 내지는 그 이상의 위원 확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던 이유가 실제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이었고 그 얘기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외국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산자부만 만나나요? 저는 발전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 사장님들 그다음에 정비소 정비하시는 사장님들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 정부가 해 줄 얘기가 없대요.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노동자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기업주들도, 중소 영세 사업주들도

상당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탁상공론으로 흐르지 않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노동자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이분들의 고통을 정말 제대로 그 거버넌스 안에 녹여 낼 수 있을지 이거 고민하는 게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텐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해 주지 않는다면 이 법이 그냥 껌데기만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지금 얘기되는 사안 중에 이 전문위원회를 법조문에 넣는 부분들의 법기술적, 법체계상 문제 여부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원모 법률에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게, 34쪽에 보시면 고용정책 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34쪽 상단 10조 4항에 보시면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요. 5항에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해서 여기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현재 이 전환법 내에서 전문위원회 관련한 항을 법문에 올리는 게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의견입니까?

○전문위원 김원모 예, 대통령령에서 전문위원회를 심의하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법률에는 전문위원회의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난 11월 22일 소위 당시 차관님의 발언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취지가 반영된다면 가장 큰 핵심 쟁점인 별도 위원회의 마련까지 양보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법문이든 부대의견에서, 시행령에 담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요. 시혜적인 차원에서 베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서, 그때는 ‘이건 법문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고민을 해서 ‘아, 이쪽 법문이 아니라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정안을 이렇게 내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야 이 말이 맞는 거지요. ‘전문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하든 노사가 많이 참여하든 법에다 그런 내용을 넣어도 상관없고 그 취지가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제가 이 별도의 위원회라는 가장 큰 핵심 쟁점을 양보한 게 뭐가 됩니까. 다시 원 자리로 해서 ‘이것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법이 제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32쪽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가 큰 쟁점 중의 하나여서 아까 전자에 논의했던 사항과 더불어 이것도 더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항 얘기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원모 마지막인데 51쪽입니다.

지원체계 구축 및 센터 관련 사항인데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전담 기관 명시 방식 관련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전환 분석센터와 지원센터를 별도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형태와 업무전담 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형태의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무 논의에서는 후자 형태인 지정이나 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들었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건 정부 측 의견 한번 듣고서 위원님들 의견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가 낸 의견은 분석센터나 지원센터나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위탁 근거나 업무전담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저희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칭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별도 조문에서 분석센터,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과 강은미 의원님은 두도록 규정하는 안이고 그 이후에 논의가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각자 의견, 해 주세요.

○이수진(비) 위원 저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의 경우는 조정안 13조에 ‘지원하는 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한다면 제가 수용 가능하다.

사실 양보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 센터의 역할과 설치·지정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전환분석센터 관련해서도 고용정보원을 상정하고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13조 등에 분석센터, 기관에 대해서 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13조에 담으시려고 하셨잖아요, 지원하는 기관 관련해서.

그런데 설치·지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준다면, 그런데 이것을 의결까지, 13조에다가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고민이 좀 있는데, 어쨌든 조금 조정할 생각은 있긴 한데 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 3개지요, 주요한 것?

○전문위원 김원모 예, 3개……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세 가지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2번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많이 조정이 될 것 같고 1번의 제명, 법안명과 목적 관련한 부분들도 조금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항도 해서 조정을 한번 최대한 빨리해서 다음번 논의 때는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김원모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공정 전환을 빼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것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

어요,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해 보자, 간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간사님이 계셨으면 제가 그것 넣고 의결하려고 그랬는데 안 오시는 바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것 정말.

그러면 이 항은 최대한 빨리 그 3개의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이수진(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3개 쟁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것도 미세하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소위원장 김영진 같이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이번에 조정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간사님.

임이자 간사님, 동의하십니까?

○임이자 위원 지금 다음으로 넘겨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자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김영진 임이자 간사님이 동의하셨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동의 안 한다고 안 할 민주당이예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면 지금 더 논의하시든가. 조금 더 논의하셔도 되고요.

○임이자 위원 오늘 논의하면 안 될 건데. 또 강제로 밀어붙일 거면 하시든가. 밀어붙이고 하시든가.

○이수진(비) 위원 노동부가 좋은 법인데 뭘 밀어붙입니까, 노동부가 밀어붙이지.

○소위원장 김영진 행정실 누구 계신가요?

임이자 간사님 시원한 물 한 잔 좀 갖다 드리세요.

○임이자 위원 나 물 좀 주세요, 진짜.

○이은주 위원 거기 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이게 덜 시원해서 그래요, 보니까.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드리세요. 정돈된 논의를 위해서 물 한 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4항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4항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대체토론 보시면, 개정안은 숙련기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왼쪽 하단의 참고사항 보시면요, 우리 위원회는 2021년 3월에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는 대안을 의결하였는데 해당 법률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안에는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같이 제출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법률안 의결 여부가 불명확하여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비) 위원 이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서 이것 원포인트로 내신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숙련기술인의 날을 했는데 그게 현재 법사위에서 언제 될지 모르니 사실은 이 안을 떼어서 이 개정안이 온 거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이견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행사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법사위에서 지금 기재위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영진 다른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이것이 적용되려면 그쪽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 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기재위 쪽 법안인데 그쪽 법 개정이 아마 잘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서……

저희도 그때 법사위에서 이 앞의 법안은 심의를 했는데 아마 그쪽 법안이 개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통과가 된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발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진작 해 줘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숙련기술인들이 우리 산업화의 역군 아니겠습니까. 사기를 북돋아 주는 측면에서 통과시킵시다.

○이은주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용기 위원 발의하신 걸 들었는데 기능한국인회 배명직 회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숙련기술인들이 다 같이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임이자 위원 예산 추계돼서 왔네요. 검토보고요지에 보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고 정부 측에서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는 안에 관련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추후에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진폐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보정 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개정안은 평균임금 증감 및 평균임금 최고·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최종윤 의원안에는 평균임금 최고·최저 기준만 적용하도록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별개로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산재법상의 평균임금 또는 고용부장관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에 진폐장애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퇴직 이후 업무상 질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이 되는데 진폐증은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서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퇴직 시점과 진단 시점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재해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의 전신인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은 각각 보험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저 기준 규정을 통해 시차에 따른 불이익을 보정하였습니다.

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고시임금을 통해 시차에 따른 불이익을 보정하였는데 위로금이 과소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부터 진폐재해위로금의 연혁 및 감사원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재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저 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각 개정안은 합리적인 진폐위로금의 산정을 도모하고 진폐위로금의 산정과 관련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저 기준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지난 2010년도에 저희가 진폐 예방법 개정 과정에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 그다음에 최고·최저 기준 적용 규정이 지금 누락돼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이 여기 좀 복잡해서 2쪽의 표로 잠깐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전문위원 김원모 표 우측 위쪽에 현행 진폐재해위로금이 있는데 원래는 평균임금이나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진폐고시임금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행 평균임금에, 왼쪽의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평균임금 보정 장치의 평균임금 증감이나 최고·최저 기준

적용이 같이 와야 되는데 여기 안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하면 과소 산정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공단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이것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줍니다.

○임이자 위원 통과!

○소위원장 김영진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저도 평균임금 증감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 재정추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용추계를?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데 법적 규정이 없어서 지금 자꾸 분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퇴직하는 시점하고 진폐가 발현되는 시점이 워낙 차이가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진폐 예방법 개정 시에 이 조항들이 좀 빠져서 지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쨌든 진폐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근거는 또 없는 상황이라 그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동의하는데요. 다른 산재 질병 중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진폐 말고요?

○김형동 위원 퇴직 후에, 한참 뒤에 진단받는 것……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석면도 결국은 나중에 진폐로 발현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진폐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산재는 그렇게 발현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김형동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있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한번……

그런데 진폐는 따로 법을 아예 달리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원장 김영진 현재 진폐 관련한, 지급 관련한 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

는데 그것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보시면 내용은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 가능 연령 확대 사항인데,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사항은, 여기 표에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순위별로 쭉 나와 있는데 개정안은 네 번째 19세 미만 손자녀에 해당됩니다.

하단의 산재사망자의 손자녀도 산재사망자의 자녀와 동일하게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시점까지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손자녀 수급자격 연령이 확대되는 경우 후순위자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례를 지금 표에 보시면 두 번째, 국민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맨 아랫줄의 손자녀에 대해서 19세 미만에서 올리지 않고 지금 동일하게 두고 있고요. 맨 오른쪽의 군인 재해보상법은 25세 미만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는 스타 표시 있는 맨 아랫줄에 보시면 손자녀가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재해보상법은 제한이 더 있는 상황이고요. 산재보험법은 이런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있는데 그 선순위자에 대해서 순위를 침범할 것인가 아니면 다 보장해 주고 나중에 시행할 것인가 이 부분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일단 수급자격 연령을 자녀와 동일하게 손자녀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후순위자의 수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한데 원래 현실적으로 후순위자인 조부모나 형제자매까지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사례도 잘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특별히 일어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수급자도 개정 규정 적용해서 25세까지 하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거지요, 정부도?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수정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배우자가 있고 25세 미만 자녀가 있고 60세 이상 부모가 있고 19세 미만 손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고 그런데 60세 이상 조부모가 또 있나요? 알 수가 있나, 이게? 이런 경우가 없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그러니까 지금은 후순위에 그렇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김형동 위원 법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모르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손자녀가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몇 건 있습니까? 작년이나 작년년 누계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5명이 있고요. 그런데 조부모나 형제자매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김형동 위원 그러면 유족보상연금이라는 게 선순위가 있으면 거기 가고 없을 때 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안 되면 내려가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그리고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

됐다는 의미가 수급을 25세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 동시에, 법이 뒤에 또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26세부터는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못 받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5건이었다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 예, 지금까지 5건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수정안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 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8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2쪽을 보시면,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 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현행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 승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본법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이의신청 기간은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기간 산입의 예외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처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리 기간은 14일 이내인데 이러한 차이를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뒤 페이지 표에 보시면 비교가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쪽의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이

2023년 3월 24일인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되고요. 적용례는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작은 사소한 질문인데요.

임이자 의원님이 이것 발의를 23년 1월 27일 날 하셨네요. 그런데 시행일을 3월 24일로 하신 이유가, 두 달 만에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급하게 뭘 해결해야 되는 게 있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때 행정기본법이 3월 24일 날 시행이 돼서 같이 맞추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수진(비) 위원 내용을 보니 기업 편의를 봐주려고, 그러시려고 한 건 아니라서 어쨌든 그 날짜를 더 축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데 다만 저희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용들을 쭉 보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타법에 따라 규제되는 식품 등 일부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의미하는데 이게 영업비밀 등 기업의 사유 때문에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이런 것들을 밝히지를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이 법과는 상관없지만 솔직히 기업 특례법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잖아요.

○임이자 위원 그와 관련해서 법안 개정하세요. 발의하세요.

○이수진(비) 위원 발의했습니다. 이제 산자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이자 위원 이견 별개예요.

○이수진(비) 위원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저희는 행정편의를 다 봐주고 있고 법에 따라서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서는 노동자나 국민들에게 위험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분명하게 영업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기업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것도 상당히 문제이고 우리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노동부가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행정기본법 바뀌었다고 금방 이렇게 그냥…… 발의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노동부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통일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 현행법보다 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견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MSDS 문제이고 작업장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자칫 이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종래보다 조속히 처리돼서 소홀히 다뤄지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본법하고 일단 법체계를 맞추는 것이고요.

○이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여기 3페이지 보시면, 기간 산입의 예외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이런 안전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MSDS가 자료를 확인하거나, 저희도 분석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듣는 시간까지는 제외하도록 해서 저희가 충분히 분석해서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 그만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동부가 제대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산입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아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동의 가능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통과시키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행정기본법에 맞춰서 현행 법령에 있는 것과 일치하기 위해서 했고 기간 산입,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걸리는 기간은 전체 결과 통지 기간에 불산입한다는 걸 명확히 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 법안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모 다음,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임이자 위원 제정법이지요?

○전문위원 김원모 예, 제정법입니다.

○임이자 위원 제정법은 공청회에 회부되어야 되는 거지요? 공청회 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원모 예, 공청회를……

○김형동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이수진(비) 위원 공청회를 하셔도 좋고 공청회가 전체위 공청회나, 소위 공청회나, 아니면 또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공청회 없이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의결하시면 그대로 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공청회는 해야 됩니다.

○이수진(비) 위원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일단은 제정법이라서 절차를 지키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이 내용을 들어 봐야 그걸 전체 공청회로 할지, 소위 공청회로 약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 회의에서 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할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은 논의를 심도 있게 해도 되니까요. 한번 내용을 들어 보고 위원님들 의견 받고 관련해서 논의를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1쪽의 총론 보시면, 조문별 검토 앞에 총론이 있습니다. 제정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기존에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했던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상설적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기본계획을 마련한 성과가 있기는 하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임금·수당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법제화,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공무직근로자의 법제화 등 기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의견을,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서는 논의 지속의 어려

움, 기존 업무체제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의 효과 측면과 기존 행정기관 등과의 업무중복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쪽 상단에는 노동계 및 관계부처 의견이 정리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예정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5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공무직위원회 구성 체계도가 있고 아래에는 전체 조문의 주요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일단 지난 3년 동안 총리 훈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일부 의제에 대한 것, 임금체계나 이런 부분은 좀……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좀 개선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임금체계나 공무직 법제화나 대다수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해서 진전 없이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관계부처에서는 전체적인 논의의 실익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공무직 상설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관련 부처, 여기에 참여했던 부처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공무직위원회 자체가 심의·조정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도 강제할 수 없어서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고 위원회 자체가 심의·조정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 해결 창구로 변질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기존 정부 기관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있고 교육부도 직접 임금 단체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고용부도 정규직 전환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낮은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특히 공무직위원회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가 있지만 그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었을 때 과연 해결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애로를 볼 때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 의제가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취약한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하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걸 그 방침과 그 방향에 아주 맞는 법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 환노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관님께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비금전적 처우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노정 합의를 통해 만든 건 성과였으나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비롯해서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공무원위원회가 정한 16개 의제 중에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 중이거나 아예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이게 당사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취약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위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법은 반드시 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대수 위원 동의합니다.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저도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기왕에 오늘 소위 공청회 날짜까지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공무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서 운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공무원위원회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 대화도 중요하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공공영역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기관처럼 움직여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그 업무들이 처음 만들어진 그런 취지대로 현장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로 다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관련한 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되었고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 생각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국무총리 훈령이 법률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까지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회적 요구도가 있었습니까, 이미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통과를 위한 노력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처우가 좀 보장이 되고 차별적이지 않다는 그런 근무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야 업무를 할 때 더 충성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우나 조건은 차별적이면서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조건의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노동부가……

그리고 이 공무원위원회도 노동부장관께서 주로 간사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 회의 진행할 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수진(비) 위원 굉장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제가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차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원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훈령으로 쪽 논의를 하고 운영을 해 봤고 저희가 간사를 맡아서 해 봤고 실제 참여했던 부처들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하는 걸 봤을 때 생각보다 운영에 비해서는 좀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사실은 담보되지 않는다면 운영하는 데 또 다른 그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팩트를 딱 말씀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면서 또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의 동행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깊이 있게 더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깐 정부에서도 보조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윤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셔 가지고 보텔 건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국무직위원회 처음 만들 때 입장하고 똑같아요.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의 평가와 반성 또는 과제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래서 공청회를 빨리하자라는 데 동의하고요. 3년 동안 해 봤더니 이런 이런 게 문제더라 또는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더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3년 전 안 되는 이유를 똑같이 써 봤어요.

○박대수 위원 이제 하면 되잖아.

○윤건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면 토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의 평가와 반성, 과제 이걸 정확하게 부처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청회가 훨씬 더 깊이가 있어질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은 국무직위원회 관련한 법률안이 제정법이지만 실제로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3년간 현장에 적용하고 운영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훈령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법률화하고 명확화해 나가는 것이고. 이게 현장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적용을 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장단점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점, 그동안 훈령에 없어서 문제가 됐던 점 이런 걸 3년 정도 운영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로 된 위원회지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시범실시라도 해 보는데 실제로 훈령을 통해서 3년을 해 보고서 그

훈령을 명확화하는, 위원회를 법으로 만드는 건데 계속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서 실제로 명확화하고 3년간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장단점과 미비 그리고 개선점을 법률에 담는 것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합의되는 지점을 하면 저는 충분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걸 새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임이자 간사님도 4월이니깐 소위 공청회를 최대한 5월에 진행을 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그런 다음에……

○임이자 위원 내가 언제 5월에 진행하자 그랬습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조속히는 다음 달 아닙니까?

○임이자 위원 내가 언제 5월에 진행하자 그랬어요? 이 부분은……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저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없는 것을 하는 것이면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충분히 3년간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잘 모아서 다음 달에는 공청회를 진행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형동 위원 어려울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의견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아까처럼……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5월에 공청회를 해서, 정부 측에서 자료나 여러 가지 부분들 준비하는 데 지장이 있냐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요?

○이은주 위원 소위 공청회.

○소위원장 김영진 지난 3년 과정 쪽 사업을 다 진행해 왔으니깐 그것 정리하고 장단점 정리하고 국무총리 훈령상에서 드러났던 각 조항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김형동 위원 불가능하지요.

○임이자 위원 불가능하지.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시간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윤건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관계부처들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서 실시했고 나중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나 처우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 있지 않으면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단독으로 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이게 결국은, 물론 노동계 쪽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이런 통로가 있는 것을 원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루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사노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형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책이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공공기관 내지 준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그 정책을 폈는데 6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시간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중간에 제대로 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시작 한 1년, 2년, 3년 차 정도 됐을 때부터 아마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말은 많았는데 그때 한번 짚고, 그 당시 훈령에 있었던 기관을 당시에 강제력을 갖는 법률적 위상을 갖도록 하는 그런 대안도 사실 제안했었거든요. 전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놔뒀다가 이만큼 왔는데, 지금 보면 어느 행정부 기관에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부가 이걸 독자적으로 법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관 하나 설치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흔히 말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단박에 된다?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공청회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말 아까 윤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제도를 새로 보완할 그럴 단계이지, 우리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큰 의견도 못 내고 있는데 ‘그래. 이 기관 하나 설치했으니까 우리 할 도리는 다 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입법을 통한 또 하

나의 면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공청회를 해야 되고 공청회를 하더라도 충분히 노동부를 통해서 의견을 듣든 아니면 당시에 공무직위원회에 들어 있었던 각 부처의 의견도 함께 들어 보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보다 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이것 통과시키자, 여기 이 법안에 오탈자도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안 돼 가지고. 진짜 충분히 고민하고 반성하는 자세에서 입법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노동부가 뭘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수진(비) 위원 다들 좋은 의견들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환노 위원님 중에 김형동 위원님이 공무직위원회 관련한 법안 발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여야가 또 관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담아서.

왜냐하면 이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나 예산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노동계에서는 다 부처나 지방정부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아시잖아요? 특히 노동부한테 와 가지고 더 필요청을 하시는데 저희도 답답하더라고요. 노동부가 전 부처에 있는 공무직의 문제를 다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문제를 노동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공무직위원회든 어쨌든 뭔가 여기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법안을 내달라고 아마 노동계에서도 요청을 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금 촉박하고, 실제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있던 공무직위원회를 기간 연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또 그런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쪽에서도 조금 더 참으셨을 텐데, 이게 기간이 도래해 버리니까 급하게 법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어쨌든 노동자들을 챙겨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전 부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노동부장관이 간사 위원도 하신 거잖아요, 이 훈령에 있는 공무직위원회도.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볼 테니까 노동부도 전 부처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부처를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 달라고 전 부처나 지방정부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이중구조 해소도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 이용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것 다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이러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이것 우리가 기준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사실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일몰 곧 된다, 9월이었을 거예요. 9월 아니면 8월이었을 텐데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연장을 하든 노동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답변은 검토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고용노동부·행안부 관계부처 의견에 3년 평가에 대한 반성과 과제가 없다는 윤건영 위원님의 이야기를, 저는 이 내용이 과거와 똑같다는 건 지금 확인을 한 거고, 정말 무책임한 거지요.

제가 일몰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김형동 위원 전 정부에서 잘못된 거라니까 자꾸……

○윤건영 위원 왜 또 전 정부……

○이은주 위원 고용노동부는……

○김형동 위원 5년 동안 운영했는데 백서 하나 없이 이것을 그냥 처 내버려 뒀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은주 위원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수진(비) 위원 지금 정부도 1년은 책임이 있지. 1년은 이 정부잖아.

○이은주 위원 잠깐만요……

○김형동 위원 하자는 거지. 그런데 반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은주 위원 제 발언 순서입니다. 제가 발언……

○김형동 위원 죄송합니다.

○이은주 위원 제 발언 기회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공청회를 충분히 잘 준비하셔야 되고, 소위 공청회 개최해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고 저는 시기도 오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빨리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시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 준비해서 5월에 여유가 있으니까 5월 말경에 해 보지요. 하고 공청회 통해서 미비하면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시작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복잡한 게 많고 해당되는 공무직노동자들 관련한 부분들이 전 부처, 전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김형동 위원이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하라고 하면 제가 무릎 꿇고 반성하겠습니다. 세 번 하려면 제가 다섯 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충분히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돼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박대수 위원 간사님, 그렇게 하는데요.

토론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탁탁 해서 할 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깐 시간이 그냥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야.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다 사회자가 잘못해서…… 제가 사회를 잘 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10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건인데 이게 좀 분량이 많아서 또 주제도 다르고 해서 자료가 2개로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쪽의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여기서는 8개 항목입니다.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심사 시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하한 조정입니다.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대한 청년 특례의 적용 연령 하한을 18세에서 1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요건심사형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선발형과 관련하여 18~34세까지의 청년은 아래와 같이 그 요건이 완화됩니다.

개정안은 완화된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 하한을 18세에서 15세로 하향하여 특례 적용 대상자를 15~17세인 청소년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2쪽, 다만 중장년층이 청소년층에 비해 세대 특성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양육비 등 생계 유지비 부담이 더 큰 측면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시행일이, 여기는 송옥주 의원안과 정부안 2개가 겹치는데 시행일이 다릅니다. 의원안은 6개월이고 정부안은 공포 후 즉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시행일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로 입장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18세에서 15세로 하한 확대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 문제 관련해서 정확하게 비용 추계했는지 나와 있나요, 뒤에?

○전문위원 김원모 2쪽에……

○이수진(비) 위원 9억 3500만 원~11억 원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한 10억 내외가 될 것 같고요. 한 1000여 명 정도 수혜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1000여 명 정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여 전체회의 가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모 4쪽의 2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과세정보 취득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요건 조사 시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료의 유통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통 대상 정보에 과세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과세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통하려는 것입니다.

과세자료 유통은 그 요건과 형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과세자료의 유통 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과세자료가 대단히 민감하고 그런 자료인데 이 시스템에 탑재되어서 하더라도 보안이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므로 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9쪽의 3번 항목 취업 지원 유예 횟수 제한 완화입니다.

개정안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인정되는 자의 취업 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임신·출산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유지하는 취업 지원 유예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간 수급자격 유지를 방지하기 위해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예 사유는 지원기간 중에 수회 발생할 수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수급자격자 인정이 철회되어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등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쪽, 개정안은 취업 지원의 유예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각 유예 사유는 대체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곤란한 합당한 사유로 보인다는 점, 횟수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유예기간은 여전히 2년으로 제한되어 장기간 수급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취약계층 수급자의 보호 차원에서 유예 허용은 탄력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사안이 없으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모 12쪽의 4번 수급자 소득에 따른 수당 지급 제한 방식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수급자가 지급 주기마다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수당 지급이 3회 정지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 지원이 중단됩니다.

소득에 따른 수당 지급 정지 시 수급자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소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정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개정 소요는 5년간 151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정부 이견 없습니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모 15쪽의 5번 부정수급 등에 따른 반환금, 추가징수금의 분할 납부 및 충당입니다.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추가징수금, 착오지급에 따른 반환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받을 수급예정액을 반환액에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는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등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분 및 착오지급분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부정수급에 관하여는 부정수급분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16쪽, 수급자로서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부정수급하거나 착오지급된 수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반환 명령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등 수당 회수율이 70%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수급자의 경제적 곤란과 효율적인 수급액 반환을 위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지급하여야 할 급여분을 회수액에 충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17쪽, 한편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등으로 부정수급액 등에 충당한 금액이 부정수급 공모자의 연대책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충당으로 반환 총액이 감소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전체 연대책무자의 채무가 면

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연대책임 제외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전문위원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0%대에 그친다’ 이 표현이 있는데, 밑의 각주에 ‘4억 78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 회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김형동 위원 부정수급되는 금액이 2021년에 4억 7000여만 원밖에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첫째 부분에 4억 7800만 원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면 관리가 굉장히 잘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702건이었어요.

○김형동 위원 702건?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예, 거기에 4억 7800만 원입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부정수급 관련된 뉴스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게끔 때리는 것 같은데 객관적이지 않네요, 보도가?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보도에서 보신 부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액을 대체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300억 규모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였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첫째에 밀착 지원을 하는 만큼 저희들이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고,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적은 사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힘들게 이 부분이 부정수급이 된 경우에, 특히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서

분할 납부하도록 만든 그런 규정입니다.

○김형동 위원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2021년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부정수급은 전체적으로 590억 정도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있고요.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이고 구직촉진수당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지급하는 액수가 실제로 미취업자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보니까 구직촉진수당 I 형은 중위소득 60% 이내네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은 1인 기준으로 하면 60이 124만 6735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인 경우까지 저희가 소득요건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조항이 바로 제일 앞의 규정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월 50을 받고 알바를 해가지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부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은 거였고 그래서 중위소득 60을 저희들이 준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인 기준인 경우에는 124만 원 정도 되고요. 4인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2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다음 항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21쪽, 6번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 대상 명확화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인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 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처분을 열거하면서도 명문상 그 외의 처분도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등’을 표기하고 있어 동법에 따른 처분 일체는 모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처분들을 열거하여 해당 처분들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리하는 안이라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모 23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법률상 그 지급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예규인 사무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사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사무 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지급사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가 체신이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지급절차 단계가 엄청나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체신관서라는 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우체국……

○김형동 위원 제 말씀은 그건 이해되는데 원래 이게 통용되는 법률용어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체신관서면 우체국 말고 또 있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래서 아마 체신관서로.

○소위원장 김영진 됐습니까?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모 25쪽입니다.

실무적인 부분들로 타당한데, 우선 기준일자 표시 명확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등에 관한 정의 명확화, 수급권 보호 관련 조문 제목 변경 이런 사항이고요.

마지막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명시는 개정안은 별칙규정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누설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여 조문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은 문장 구조에서는 직무상 비밀 누설이 금지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칙규정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구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기타 개정사항 관련해서 이견 없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도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수정의견으로,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김원모 계속하겠습니다.

같은 법입니다. 다음 자료인데요. 1쪽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적용 연령 상향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으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받는 청년의 연령기준을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의 취업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요건 중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재산기준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하는 청년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개정안은 남성 청년층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남성 청년층에게 평등한 취업지원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큰 35~39세 남성의 고용률이 같은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이나 현행법상 청년층인

30~34세 남성 고용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쪽, 한편 개정안은 병역법 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특례를 적용하는데 해당 병역의무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 병역의무 전체를 의미하므로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급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자이고 또 장교·부사관 등은 장기 복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병역의무 이행한 자에게 취업 지원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하는 것에는 저희가 수용의견이구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병역에 관련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지금 고용노동부 답변이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셔서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대한 우려점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류를 제한하는, 예를 들어서 장기 복무는 빼고 단기 복무만 할 것인지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군복무에 대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연을 시켜주는 이렇게 해 주는 방법,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전용기 위원님 한 말씀 해야지요.

○전용기 위원 동의합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전문위원이 3쪽에서 얘기했던 병역법 3조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해당 병역의무는 현역, 보충역, 예비역이 있는데 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시행령에 해야 한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구분해서 하고 그다음에 보면 뒤에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무기간들 두루두루 해서 실제로 상황과 조건에 맞게끔 시행령에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것이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맞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은주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마지막입니다.

10쪽의 근로장려금 환급자 과세정보 취득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근로장려금 환급자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 관련 수당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그 지원 대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세 환급을 통해 복지급여 수급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11쪽,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주로 낮은 수준의 소득, 단시간 근로 등 열악한 고용환경이므로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요건을 갖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에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취업지원 수요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근로장려금 환급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등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쪽,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시적으로 과세정보 제공에 반대한 경우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우선 근로장려금(EITC) 대상은 당연히 저소득계층일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국세청 등과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얻었고요.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우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고, 두 번째는 유사 입법 사례가 소상공인법 등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처가 저희가 과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도 상당히 공지를 하고 사전적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과정관리를 하는 부분이 취해진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점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동의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런데 다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도 그것도 존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에서 찬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저희가 과세정보를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는다는지, 그러니까 성명과 전화번호만 받아서 한다든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해서 알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보호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정도까지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그

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던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이것은 제가 수정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바꿔 달라고 부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조치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근로장려금 관련한 자료 할 때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제외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한 거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원모 이 경우 ‘등’으로 해서 국세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 국세청장이 상당히 재량권이 있는데 이렇게 예시가 들어가면 국세청이 여기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청의 거부 의사를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세청이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일단 자료를 받되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받고 사후적으로 저희가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지 않는 보완조치를 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은 대체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 저는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밝혔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은 행정의 어찌 보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고 효율적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둔 이유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강제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에 올리고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그런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거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많은 문제 제기들의 가치와 지향들이 무너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님,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본인이 동의할 시’로 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면 실제 이 과세정보 자료를,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해서 문제가 되나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실무적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가구가 433만 가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많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그렇게 되면 그 대상 가구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정보가 나가는 것을 하겠습니까?’ 하고 개별 클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면 여기가 열심히 일한 하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적어서 일단 세제라는 장려금을 주는 부분이고, 여기 이 가구의 특징이 일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고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실제 법안을 보시면 국세청에서 공문으로 받은, 공문의 법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데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환급일자라는 부분만 해 주게 최소한으로 줄여 났고 주민번호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개인정보에 대해 굉장히 저희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소득이 급격히 낮아졌거나 이 근로장려세제를 받았는데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실직된 상태에 있는 사람만 최대한으로 이것을 줄여서 받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개별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세청에 처음에는 개인정보처럼 이 안을 넣어 달라고 그랬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국장님, 그러니까요. 그 진행은 다 아는데 이 조항을 넣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엄청난 시한 그다음에 시간·노력이 다 들어가나 이거지요. 아까 말했듯이 400만 명에 대해서 다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위원장님, 그런데 법안 내용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의견은 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국세청의 의견이 또 받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또 해당 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와서 이 법안에 대한 중요한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냥 지난번에 소상공인법 할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침익적 행정행위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수익적,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조치를 했냐면 그 당시에 중기부에서는 개인정보 요청·수집을 하고 문자를 보낼 때 개인정보 동의 요청을 같이 받아서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를 했던 식으로 하고, 아까처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하는 전산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자체가 이것 자체를 굳이 저희한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 될 큰 그거는 없는 것이고, 정보를 활용하는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식으로 되는 것이라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그것을 사후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올라가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지금 소상공인법이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지금 이게 무슨 수사나 무슨 범죄나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관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담보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소상공인 관련한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었지요, 그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소상공인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300만, 400만 정도 되는 숫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300만?

국장님, 이 관련한 것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지금 근로장려금 현황은 22년 기준으로 433만 가구가 전체 대상입니다, 일단 이 법적 근거로 보면.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장이 줄 수 있는 권한은 법안에 담되 그 과정 관리할 때 개별 동의는 고용노동부가 받는 게 좋겠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개별적으로 받으려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한 근거는 넣고 시행할 때 개별 동의 조치는 중기부처럼 고용노동부가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권한에 대한 부분이라 이렇게 법조문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다수의 정보가 사실 공개되는 거잖아요, 국세청 과세자료가.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맞게끔 대상자들을 추려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한 의견은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그 판단을 받아 보면 좋겠네요. 우리는 통과, 그렇게 합시다.

이수진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것을 433만 가구라고 하셨는데 이것 개인으로 따지면 더 되지요? 800만 명?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예. 왜냐하면 4인 가구, 3인 가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수진(비) 위원 그렇지요? 이것 EITC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이수진(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료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자료를 국한시키고 특히 소득이 없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장려금을 받았지만 소득이 없다는 것은 실적이 됐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동시장에 있다가 다시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저소득가구라서 굉장히 일자리 찾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수진(비) 위원 참시만요. 알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EITC에서 이게 거의 900만 명 가까이 되는 개인자료를 노동부가 받게 되는 건데, 이것을 받는 분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활용 가능한 거잖아요. 궁금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이 EITC 받는 분이 어떤 분들이고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수익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지 이게 이제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자료 아니었어요, 이게 혹시?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렇지만 저희가 받는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안 받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환급일자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전화번호 정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그러면 안대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김형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형동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을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아닙니다.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김형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이게 제도가 운영이 됐어요? 방금 말씀……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지금은 홍보를 통한 신청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근로장려세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지금은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 장려금을 타러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현재는 그러니까 전체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정책의

내용·방향을 안내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신청을 통해서 하면 누락되는 분들도 있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엄청 많지요.

○김형동 위원 엄청 많지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EITC가 필요하신 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우리가 항상 선한 입장에서 결정은 합니다.

그러시지요. 일단 이거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판단은 법률 관련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에 의견 한번 맡겨 봅시다.

○이은주 위원 관련해서 오늘도 이 부분이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취지는 너무나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좀 길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법사위 가서 또 똑같은 게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취약노동자들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법사위 준비를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 일정에서 3시간 정도 했는데, 2시에 했는데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의견이 좀 있어서요.

추가 5월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오늘 상정됐던 것은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서 계속 논의하고요. 추가적으로도 아까 말씀 주셨던 안들은, 이수진 위원님하고 이은주 위원님이 아까 제기했던 사안들은 추가로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원포인트로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소위 하면 어때요, 전환합?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조정해서 예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5월에 소위를 열어서 그렇게 진행을 같이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적절하게 잡아서, 2시에 하니까 상당히 좀 늘어지지 않습니다. 10시부터 해서 점심 하고 오후에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소위를 5월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되고 동의된 사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안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진	김형동	박대수	윤건영
이수진(비)	이은주	임이자	전용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모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
통합고용정책국장	하형소
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서비스정책관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